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 6. 27.(화) 14:00～18:40

▣ 장　　소 : 문화재청 1동 906호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김상남, 김종헌, 김태일, 나창순, 목수현,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한경순(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문화재위원회 규정」제10조에 따라,

-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문화재위원회 규정」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 및「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현상변경	(공 개)
2	국가등록문화재「구 목포세관 본관 터 창고」현상변경	(공 개)
3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	(공 개)
4	국가등록문화재「여수 구 율촌역」현상변경	(공 개)
5	국가등록문화재「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현상변경	(공 개)
【검토사항】		
6	국가등록문화재「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종합정비계획 검토	(공 개)
7	국가등록문화재「통영 소반장 공방」종합정비계획 검토	(공 개)
8	「휴전회담 회의록 요약본 부록」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안건번호 근대 2023-06-01

1. 국가등록문화재「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국가등록문화재「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소재「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국유)의 보존처리 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기상청장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 격 (세로×가로)	제작연대	소유자 (소 재 지)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총 680점 (관측야장 524점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	17.0×10.2cm 등	1904 ~ 1915	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3) 신청내용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보존처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4.1.11.

○ 사업대상 : 관측야장 10점(879장)

○ 사업내용 : 상태조사 및 과학적 분석, 보존처리, 원형 제책 및 보관상자 제작

(4) 진행경과

○ '22.12.20.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23.06.09. 현상변경 허가신청(관측야장 10점/879장)

○ '23.06.13. 대상유물 현지실사

라. 현지조사 의견

○ ○○○○○ ○○○○○ ○○○○○ ○○○('23.6.13.)

- 1900년대 초 생산된 기상관측 야장은 검정색 천으로 싼 겉표지에 내부는 모두 양지로 편철되어 있으며, 펜, 연필 등 다양한 필기 매체가 사용됨.
- 전체 수량이 방대하므로 상태조사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적인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세워 진행 필요.
- 메움지는 원본과 유사한 물성과 규격의 종이를 제작하여 투명도, 색감, 질감을 맞춰 이질감을 최소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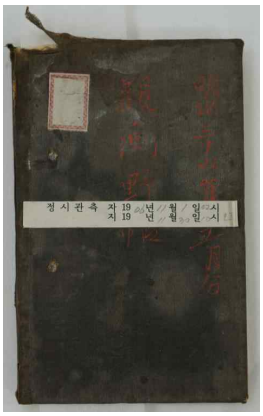

표지 손상

책등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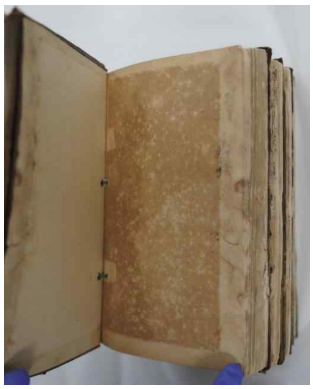

내지오염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재질 분석 방법 보완
- 유물 상태에 따라 세척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
- 양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2

2. 국가등록문화재「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남 목포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의 본관 터에 보호각을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의 본관 터에 보호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목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20.6.24 등록)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8, 6-33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8, 6-33

※ 당해 문화재

○ 세부내용 :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보호각 건립

- 발굴터 규모 : 24m × 24m
- 건축면적 : 731.52㎡
- 규모 : 28.5m × 22.5m × 최고높이 7.5m
- 주요구조 : 구조용 집성재 및 철골, 징크 및 강화유리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23.6.1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유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발굴 상태도 좋으나 현재 우수 대책이 미비하여 유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각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단, 보호각 2층의 경우 현재의 계획에서는 해안로177번길 방향(서측방향)에서만 유구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해안로 방향(남쪽방향)에서도 유구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보호각의 주 구조와 기초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참고사항 : 관계전문가 설계 자문의견 (‘23.5.4.)

ㅇ 전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수리기술위원 ㅇㅇㅇ

- 현 해당 문화재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가 등록되었으며 그 유구 터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현재 유구 터는 모르타르와 조적구조로 되어있어 노출이 지속될 경우 점차 훼손되고 소멸의 우려가 있어 문화재적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된다. 유구 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각 설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 보호각 전체적인 형태는 화려함 보다는 실용적인 형태를 가지며 유구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므로 내부통로 설치는 지양하도록 한다.
- 합리적인 규모와 형태를 가진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보호각의 높이는 기존 건축물인 창고A.B동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하여 계획토록 한다.
- 보호각 주변의 보행로(인도)에 인접하여 건립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호각 건립에 사용되어지는 자재(재료, 색상 등)는 실시설계 과정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보호각 일부를 활용하여 구 목포세관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구상하는 방향도 좋을 듯 하다고 판단된다.
- 보호각 건립으로 끝날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내방객에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보호각 건립 이전에 유구에 대한 경화 처리 등 보존처리를 먼저 시행하여 유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3

3.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는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변경된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0.25.) : **부결**
  - 사유 : 음악종 구조물은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22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2.06.) : **조건부가결**
  - 사유 : 색깔 등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추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대구 계산동성당」('81.9.25. 지정)

○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10 (계산동2가 71-1외4필지)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대구 중구 서성로 10(계산동2가 71)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9m이격

○ 세부내용 : 음악종 구조물 설치

	'22. 10. (부결)	'22. 12.(조건부가결)	'23. 6.(금회)
위치	파고라 철거 후 설치	역사관 옥상 위	파고라 철거 후 설치
형태	옛 사제관 형상화	옛 사제관 형상화	-
규모	7.2m × 7.2m × H 7.9m	5.7m × 5.7m × H 4.5m (설치 후 최고높이 11.64m)	7.2m × 7.2m × H 7.8m
주요 구조	ㅁ형강 철골조 (200x200x4.5T)	ㅁ형강 철골조 (200x200x4.5T)	ㅁ형강 철골조 (200x200x8T)

라.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22.10.2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좌·우 종탑 상부에 설치된 종은 각각 1908년(좌측종탑)과 1900년(우측종탑)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해 오는 과정에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식, 표면 박리와 함께 일부 종에서는 파손이 진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교체 시 종소리가 현재와 이질적이지 않도록 크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교체 과정에서 종을 해체하고 설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하겠음.

○ 음악종은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당 전례와 행사에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근대문화유산(근대골목 등)을 찾는 관람객에게 성당의 역사적 의미 부여와 함께 도심 속 쉼터 및 친교 장소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과거 멸실된 사제관을 형상화 한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며, 규모(체적)도 작지 않아 성당 주변의 경관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와 어울리는 형태로 보완 후 재심의

○ 출석 11명 / 보류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4

4. 국가등록문화재「여수 구 율촌역」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여수 구 율촌역」의 외벽 등을 보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구 율촌역」의 외벽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수시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여수 구 율촌역」('06,12.4. 등록)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길 18, 외 (조화리)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길 18

※ 당해 문화재

○ 세부내용 : 외벽 등 보수 및 주변정비

- 율촌역 보수
  - 외벽 : 박리 박락 및 균열부 보존처리, 전체 재도장
  - 외부 창호 및 배면 천장 : 면처리 후 재도장
  - 배면 좌측 기둥 하부 덧댐부재 교체 등
- 율촌역 주변 정비
  - 배면 마당 철거 후 쇄석 부설
  - 기존 국기게양대 철거 등

라. 현지조사 의견('23.6.21.) : 문화재위원 ○○○

○ 여수 구 율촌역 외벽 보수를 위해 크랙이 발생한 부분은 수지 처리하고, 목부재는 기존 도색을 제거하여 면 처리 후 동일 색상의 수성 페인트로 재도색하되 먼지 등으로 오염이 심한 배면 측 벽면과 천장면은 세척 후 보수하도록 함.

○ 배면 철로와의 사이에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면은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빠

짐이 좋은 쇄석을 깔아 마감하되 배면 출입구에서 철로로 연결되는 보행공간 바닥면은 역사와 철로 사이의 동선과 관계를 보여주는 영역이므로 현 상태로 보존하도록 함.

○ 배면 마당의 국기게양대는 정확한 설치시기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 율촌역 시설의 일부이므로 철거하기 보다는 탈락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 현 상태로 보존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배면 출입구에서 철로로 연결되는 보행공간 바닥면과 국기게양대는 보존토록함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5

5. 국가등록문화재「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현대미술관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02.5.31. 등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일부 철거 및 외관 변경

- 일부 철거
  · 1960년 이후 증축된 건축물 철거
  · 1932년 건립 구역 건축물 일부 철거
- 외관 변경
  · 외벽면에 접하여 건축물 수평증축
  · 3층부 전체 철거 후 건축물 수직증축
  · 좌·우측 연결통로 철거·입면 복원
  · 형태 변형된 창호 교체
- 기타
  · 내진보강(전단벽, 탄소섬유 등), 조적벽체 보강, 지하층 증축부 보강, 지상 3층 증축 구조보강 등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6.16.)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단순 지방 행정업무시설이 아닌,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행정

적 기능에 확장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내재된 문화유산임

○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해방 이후에도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 왔으며, 점차 확대되는 충남도 행정업무를 위해 현재 3층 부분이 계획되면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대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알려진 현재의 문화재 경관과 이미지는 지역사회에서 상징성과 장소성, 시대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되고 있음

○ 구 본관의 3층은 1960년 증축공사로 현재 모습이 갖춰진 것으로, 금번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계획안에서 제시된 문화재 원형 복원 및 미래를 지향하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 증축부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제안은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건축적 의미에 연속선상에서 볼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제시된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문화재 등록 부분이 아니어도 문화재 위에 직접 연결되는 수직 증축부의 파사드에 의한 형태적 변형은 기존 문화재 입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재 경관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커질 것이 우려됨. 따라서 문화재의 파사드 변형을 최소화하고, 옛 충남도청사의 지역성 및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 3층에 적용되는 구조보강 방안은 구 충남도청사의 기존 내부공간에 간섭을 수반하는 보강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배면(중정부) 출입구 주변에 수직동선 확보를 위해 계획되는 증축부분에 지하터파기 시 문화재 변형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구조적 검토와 보강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됨

○ 출석 11명 / 부결 1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6

6. 국가등록문화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종합정비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20.12.31. 등록)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241-1

○ 소유자 : 통영시

○ 등록면적 : 1동, 306.49㎡

○ 등록현황도면 : 없음

(2) 추진경과

○ 2022.04.05. : 용역 착수

○ 2022.10.26. : 용역 중간보고

○ 2023.03.06. : 용역 최종보고

(3)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종합정비계획 ※종합정비계획(일부철거 포함)에 따라 사업추진 될 경우 등록구역 조정 추진

- 외관 정비

<현황>

<계획>

- 평면 정비

<1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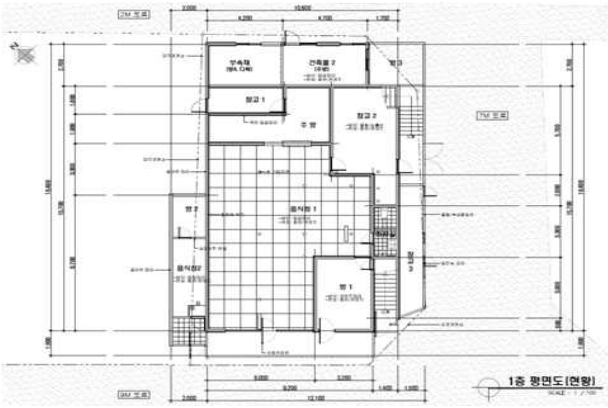

<1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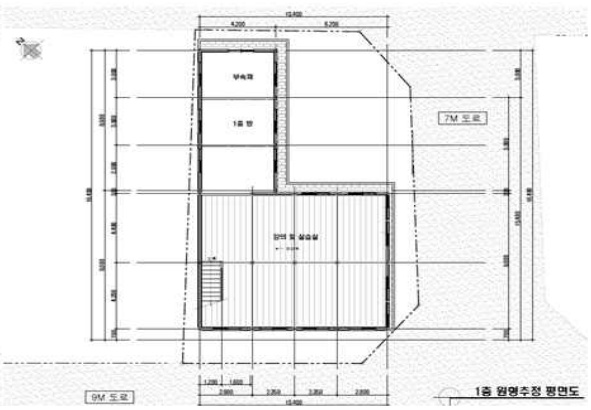

<2층 현황>

<2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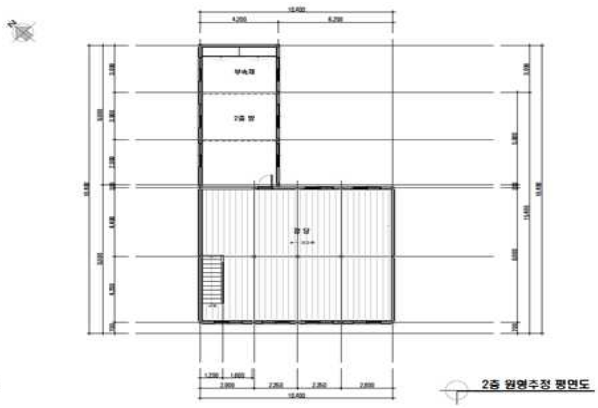

○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별	단계별	연차별	중점사항
종합정비 계획준비	1단계	1차(2023) 2차(2024)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세부 실시설계
보존·보수·활용 정비	2단계	3차(2025) 4차(2026) 5차(2027)	·문화재 건축물 및 구조물 보수 정비 ·전시실 및 체험실 건축 정비 ·외부 경관, 소방, 방범 정비 등 ·전시실 및 체험실 운영

라. 의결사항

○ **보류**

- 등록 범위와 현재 현황 비교 자료 및 1950년대 당시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출석 10명 / 보류 10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7

7. 국가등록문화재 「통영 소반장 공방」 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통영 소반장 공방」의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소반장 공방」의 종합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종합정비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통영 소반장 공방」('17.10.23. 등록)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55

○ 소유자 : 통영시

○ 등록면적 : 2동, 50㎡

○ 등록현황도면 : 없음

(2) 추진경과

○ 2020.03. : 용역 착수

○ 2020.09.18. : 용역 중간보고

○ 2020.11.06. : 용역 최종보고

(3)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문화재 이전 ※종합정비계획(문화재 이전)에 따라 사업추진 될 경우 지형도면 고시 추진

- 이전(移轉) 부지

	1안	2안	3안
지번	도천동 245-1	도천동 335-8	평림동 983-7
대지면적	169㎡	156.6	111㎡
소유자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직선(이격)거리	약 170m	약 270m	약3.4km

○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별	연차별	내용
1단계	2025 ~ 2026	소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실측조사
2단계	2027 ~ 2028	이전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완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방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이전 장소는 추후 결정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제척 1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8

8.「휴전회담 회의록 요약본 부록」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개인 소장「휴전회담 회의록 요약본 부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휴전회담 회의록 요약본 부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10.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5.1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 재 지
휴전회담 회의록 요약본 부록	730장	20.5×33 등	1951~1953 등	개인	○○○○○ (○○○ ○○○○ ○○○○○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2.10.19.) : 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05.1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5.11)

- 본 유물은 한국전쟁 휴전회담 당시 생산된 것으로 원소장자로 추정되는 원득한(Richard F. Underwood)의 역할과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음. 그러나 휴전회담 당시 회람되었던 것으로 현재 원본(최종본)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공개되고 있어 그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연구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문서군의 원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입수 경위의 파악이 어려우며 문서철의 해체로 인하여 기록물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쉬운 부분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함.

○ ○○○○○○ ○○ ○○○('23.5.11)

- 리처드 언더우드(원득한)가 수집·보존·활용한 자료의 일부로써 휴전회담 참모 및 통역 연구 자료로 활용 가치는 있으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수집자료(NARA) 중 미 육군참모부 문서군 내에 '휴전회담회의록 요약 및 일지'를 공개하여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수집 경로가 불명확하고 자료의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개하고 있고, 원형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 ○○○('23.5.11)

- 휴전회담은 물론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언더우드 가문의 역할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물적·사료적 가치가 다소 인정되나, 현재 소장자가 해당 문서군을 입수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휴전회담 중 생산된 일부 문서를 수집한 것으로서 회담 자체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점, 당대에 사본이 다수 생산되었고 그 내용이 이미 학계에 알려진 문서로서 유일성이 결여된 점, 원소유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문화재 등록은 시기상조라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 부결 8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09

9.「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재「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11.1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5.3.)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몽양 여운형 장례식 만장	117점	221×67 등	1947년	○○○○○	○○○ ○○○ ○○○ ○○○ ○○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2.11.11.)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청 → 문화재청)

○ ('22.5.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5.3.)

- 만장(輓章)은 전통 장례식에 사용된 것으로, 망자의 덕과 업적을 기리는 문구를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들어,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 것이므로 망자를 기리는 사람들의 부의(賻儀)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원래 만장은 3년 상을 치른 뒤에 소각하는 것이지만, 여운형 사후 한국전쟁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유족이 보존하고 있었으며, 만장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임.
-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만장 자체가 남아 있기 어려운 유물이므로 희소 가치가

있으며, 또한 항일운동가인 여운형의 죽음은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대립과 정치적 대결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므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원본성과 유일성도 있음. 따라서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23.5.3.)

-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차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 장례식 당시 사용된 만장으로, 몽양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몽양의 역사적 위상과 그의 정신과 사상을 적은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여운형 장례식 만장은 몽양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장례식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한국근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의 만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다고 판단됨

○ ○○○○○○○ ○○ ○○○('23.5.3.)

- 여운형은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좌우합작운동 등의 대표적 대중정치인으로 암살이라는 극적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여운형 만장은 개인의 역사, 해방정국이라는 인물과 시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현대사의 고비를 상징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
- 여운형 장례식에서 사용한 만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원본성·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10

10.「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독립기념관 소재「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9.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4.26.)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16건 19점	53.2×38.6 등	1925년~ 1933년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독립기념관로 1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10.4.~'10.11월) :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2.9.7.)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 → 문화재청)

○ ('23.4.2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4.26.)

- 색동회 회록은 색동회 창립 전후의 논의 과정과 분위기, 활동 방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나,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한 편이라는 아쉬움이 있음.
- 검토 대상 유물 어린이날 행사 관련 자료 15건은 1920~1930년대 어린이날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봄. 현재까지 독립기념관 이외의 타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며 희소성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16건 모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23.4.26.)

- 색동회 회록은 방정환을 비롯한 청년 지식인들이 어린이운동에 준비하는 과정을 소상히 살필 수 있는 기록으로서 수기로 작성된 유일본이라는 점에서도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일제강점기 어린이날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 기념일로 역사적 의미가 큼.
- 본 유물 어린이날 포스터, 기, 선전지 등은 어린이날을 표상하는 상징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높으며, 어린이날 표어 모음과 어린이날 행사 지침 등은 실제로 어린이날이 어떻게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23.4.26.)

- 색동회 회의록은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산이며 유일한 기록으로서 보존 가치가 크며, 어린이날 포스터 및 깃발은 어린이 인권 보호와 소년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재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초창기 포스터 등은 모두 신문 등에 게재된 흑백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물 포스터 및 깃발 등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어린이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적 활용도도 매우 높으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안건번호 근대 2023-06-11

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table>
<tr><th>문 화 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 업 내 용</th><th>처리
결과</th><th>처리
일자</th></tr>
<tr><td>국가등록
문화재

6·25
전쟁
군사
기록물
(육군)</td><td>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td><td>육군
기록정보
관리단장</td><td>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육군 기록정보 관리단장
(2) 허가 내용
○ 내용: 6·25 전쟁 군사 기록물 보존처리
○ 수량: 9,360장
※총81,420장=21,806(완료)+9,360(당해)+50,254(예정)
(3) 허가(수행)기간 : ‘23.5.18.~11.30.
(4)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20.6.24.
○ 정기조사(’21) E(수리) 등급
○ 보존처리 내역(’20~’22/3년간)
<table>
<tr><th>차수</th><th>신청일</th><th>허가통지일</th><th>보존처리기간</th><th>수량(장)</th></tr>
<tr><td></td><td colspan="3">2020년 문화재 등록 이전</td><td>3,074</td></tr>
<tr><td>1차</td><td>’21.2.4.</td><td>‘21.3.24.</td><td>’21.3.24.~11.20.</td><td>9,360</td></tr>
<tr><td>2차</td><td>’22.7.13.</td><td>‘22.7.29.</td><td>’22.7.29.~11.18.</td><td>9,372</td></tr>
<tr><td colspan="4">합 계</td><td>21,806</td></tr>
</table>
(5) 현지조사 의견
<‘23.5.16./문화재위원 ○○○>
○ 유물 전체가 산성화되어 지질의 약화, 변색, 결손, 꺽임 등의 물리·화학적인 훼손상태임
○ 보존처리 시 다양한 필기 매체 부분의 사전 테스트로 글씨 번짐 등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하며, 결손 부분의 메움지는 대상에 따라 이질감을 최소화 하여 보강
○ 건조시 세밀한 온습도 조절로 변경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물별로 산도를 측정하여 탈산처리 진행
</td><td>허가</td><td>’23.5.18.</td></tr>
</table>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경남 산청군	산청군수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이전 허가사항 변경허가>** **(1) 허가받는 자** : 산청군수 **(2) 변경허가 내용** ○ 대상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250-5번지 일원 ○ 내 용 : 담장 이전 ・L=29.77m ※ 변경사항[이전 위치(선형) 변경] **(3) 허가조건** ○ 제출된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하되 당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당초 허가조건 - 기존 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기존 담장 쌓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쌓도록 함 - 담장 내외부 고저차가 있는 곳은 지대석 하단부 시공과 배수 처리에 유의하도록 함 **(4) 허가기간** ○ 2021.10.15..~2023.12.31. **(5) 참고(전문가 (서면)자문의견)** **<前문화재위원 ○○○('23.6.9.)>** ○ 도로 확장 및 변속차선 30m 설치를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담장을 이축하는 현상변경이 허가된 상황에서, 변속차선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변속차선 길이가 40m로 변경이 요구되면서 기 허가된 담장 이축 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 ○ 변경의 주요내용은 변속차선 확장에 따라서 담장 곡면부 곡선반경을 R=15m에서 R=12m로 변경하고 담장 이축 길이를 31.35m에서 31.80m로 0.45m가 증가하는 등 기 허가된 담장 이축계획 내용 중 일부만 변경 ○ 금회 변경계획은 기 허가된 현상변경에서 이축 담장의 위치, 길이, 형식 등이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소규모로 변경되므로, 신청된 현상변경의 범위와 내용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변경 허가	'23.6.1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